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서 울 고 등 법 원

제 11 민 사 부

판 결

사 건	2018나2022426 공탁금출급청구권확인 청구의 소
원고, 피항소인	A
피고, 항소인	C
제1심 판결	서울중앙지방법원 2018. 4. 4. 선고 2017가합27216 판결
변 론 종 결	2018. 9. 6.
판 결 선 고	2018. 10. 11.

주 문

1.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.

2.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청구취지 및 항소취지

1. 청구취지

[redacted]공사가 2017. 5. 22.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7년 금제1124호로 공탁한 237,121,590원에 대한 공탁금출급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.

2. 항소취지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.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.

이 유

1. 제1심판결의 인용

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.

○ 제1심판결 중 "피고 B"으로 기재된 부분은 모두 "B"으로 고친다.

○ 제1심판결 7면 11행 ~ 21행까지의 "①, ②, ③, ④"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.

『 ① 이 사건 보상금 약 237,000,000원에는 건축물에 대한 보상금 외에 건축물 내·외부에 있는 콩나물 재배에 필요한 냉동기, 살수기 등의 각종 기계설비들에 대한 보상금 및 콩나물 영업의 휴·폐업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금 등이 포함되어 있는바, 위 건축물은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등과 같은 미등기 가설건축물로서 이에 대한 보상금이 위 전체 보상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작아 보일 뿐 아니라, 위 기존의 가설건축물마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후 발생한 화재로 소실되었고 이후 B이 이를 다시 설치·축조하였던 점, ② 피고는 2011. 3. 14. '피고는 B이 이 사건 토지에서 콩나물 재배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매월 차임을 받는 조건으로 위 토지에 대한 사용을 허락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이후 피고가 B의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위 토지 지상의 가설건축물 소유자인 B은 위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위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'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1가단5972호로 B을 상대로 건물철거 및 대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, 이에 대해 B도 위 가설건축물이 자신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는 다투지 아니하였던바, 위 법원에서는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2011. 9. 22. 법정지상권에 의하여 위 가설건축물에 대한 사용권원이 있다는 B의 항변을 배척하고 피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항소심(수원지방법원 2011나35279)을 거쳐 그대로 확정된 점, ③ 피고는 위 판결 확정 이후 이 사건 보상금 채권이 B에게 있음을 전제로 수원지방법원 [redacted]지원 2014타채10163호로 채무자 B의 제3채무자 [redacted]공사에 대한 위 보상금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기도 한 점, ④ 한편 원고는 B에게 2007. 3. 이후 수차에 걸쳐 사업자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대여하여 2009. 10. 9. 기준으로 변제받지 못한 대여금 잔액이 약 3,000,000,000원 이상에 이르렀고, 이에 B은 2008. 6. 이후 여러 차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지장물과 각종 기계설비류 및 그 영업권은 물론 향후 수용으로 보상금이 지급될 경우 그 보상금 채권도 함께 이전한다는 취지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주기도 한 점, ⑤ 비록 이 사건 토지의 등기필증에 첨부된 매매계약서에는 '토지 매매대금 270,000,000원, 가설건축물 매매대금 20,000,000원'으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, 위에서 본 ① 내지 ④의 각 사실과 더불어 냉동기, 살수기 등의 각종 기계설비들에 대한 소유권이나 콩나물 재배 및 판매 등의 영업권은 그대로 둔 채 유독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와 같은 미등기 가설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해 주기로 약정했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정을 보태어 볼 때, 위와 같은 기재에도 불구하고 위 가설건축물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목적물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알 수 있다. 』

2. 결론

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 · 출력되었습니다
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.게시일자 : 2018-12-14

재판장 판사 김재호

판사 홍지영

판사 조은래